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안 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방법 및 기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마련 (안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86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를 관리토록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식량정책관	박수진	044-201-1801	010-2318-1367	psjin@korea.kr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044-201-1851	010-3362-8237	leejc@korea.kr
서기관	김태형	044-201-1855	010-3695-3732	kth11129@kora.kr
사무관	노봉래	044-201-1852	010-6325-1806	roh22@korea.kr
주무관	김형대	044-201-1853	010-8288-5046	khd7924@korea.k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3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내역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 내역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내역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 및 정보의 신뢰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公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의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8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제18726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 체계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u> <u>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내역</u> <u>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 내역</u> <u>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u> <u>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u> <u>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내역</u> <u>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u> <u>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u>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 및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
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시행하는 농업생
산기반시설 유지·보수 공
사를 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
의 50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관리를 위해 필
요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公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연 락 처	(044) 201 - 1852